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유용원·강선영·안철수

조승환 • 백종헌 • 이헌승

강승규 • 이달희 • 인요한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, 조기경보체 계,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,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,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.

동 법은 에너지의 90%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이스라엘-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· 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.

그런데,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 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,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%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라늄과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34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1항 전단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"로, "체결할수"를 "체결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대상 및 절차"를 "대상, 방법 및 절차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 별법 별법 제34조(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제34조(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) ① 공공공급기관의 과 특례) (Î) ------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----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 한 법률」 등 계약절차 관계 는 계약에 관한 법률 | , 「지방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「공공기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 • 물품의 구매 및 공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| -----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의 <u>대상 및</u>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 ----체결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 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 약을 할 수----. ---대상, 방법 및 절차-----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